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8. 28.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97호로 2023년 8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
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7. 13. ~ 8. 2./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경륜 영등포지점의 운영 종료로 수입금이 없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 및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되어 온 기금은 일반 회계로 세입 조치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

○ 검토 결과

-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은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2001년 설치됨.
- 2021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륜장 휴관 및 경륜 영등포지점의 운영 종료(2021.5.31.)로 인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익금 배분에 따른 수입은 없었으며,
- 2023년 6월 신정교 하부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집행을 끝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상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2023.12.31.)

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는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한 경우 기금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

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8. 28.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98호로 2023년 8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다자녀 가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자녀 가족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7. 6. ~ 7. 26./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절벽의 현실 속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우리 구 조례상의 다자녀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30% 감면적용을 받는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현행의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에서 “자녀 2명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로 변경함.

○ 검토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24만 9천명으로 사상 처음 25만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합계출산율¹⁾은 0.78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임.

한편,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중 첫째 비중은 62.7%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후 가장 높았던 반면, 둘째(30.5%)와 셋째(6.8%) 비중은 전년보다 각각 4.5%포인트, 1.4%포인트 감소하여 점차 아이를 한 명만 낳아 기르는 추세임.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1) 가임기 여성(15세~49세) 1명이 가임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참고로,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지난 3월 조례 개정²⁾을 통해 다자녀 가족 혜택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였음.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와 서울시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상의 다자녀 지원 기준을 이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딩크족으로 살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³⁾ 1자녀에 대한 지원도 강구하는 한편 저출산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서울시 조례개정을 통한 다자녀 감면혜택 대상 확대: 3자녀 → 2자녀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30%~50% 감면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면제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식제대혈 공급 비용 면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3) 가. 우리나라 총 혼인 건수는 2012년 327,073건에서 2022년 191,690건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부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초혼·재혼 및 외국인과의 결혼 등이 모두 포함. 통계청 KOSIS.)

나.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 6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2022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50%로 2년 전보다 1.2%p감소했음. 그 중 미혼남자의 경우 36.9%만, 미혼여자의 경우 22.1%만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함.

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25~39세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2 출산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남성 중 31%가, 여성 중 44.6%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함.

참 고 자 료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